

서울특별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177
----------	------

2019년 12월 16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19년 10월 22일
3. 상정일자 : 제290회 정례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 11월 27일 상정· 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복지정책실장 강병호)

1. 제안이유

-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을 위하여, 장기요양요원 근무환경의 질적 향상과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상담 등을 지원하는 전문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9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및 제11조(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 추진 필요성

- 센터의 운영은 어르신돌봄종사자들의 역량강화, 인식개선, 권익옹호 등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다년간의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기관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 양질의 장기요양요원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법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기존 사회복지보조금사업을 2020년 1월부터 민간위탁사업으로 변경운영을 위해 신규 민간위탁 절차에 따라 추진 필요함.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좋은 돌봄 인식개선 및 확산
- 돌봄노동자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 돌봄노동자 권리향상을 위한 노동권 사업
- 돌봄노동자 재충전 및 건강증진 사업
- 요양현장 조직 지원과 현장 소통 창구 역할
- 돌봄관련 제도 개선 및 정책플랫폼 역할
- 4개 권역센터(쉼터 포함)의 협력적 운영 및 지원
- 어르신돌봄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휴가제 지원 사업
-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리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라.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0, 대일빌딩2층
- 이용대상 : 서울시 지역자활센터 내 사업모집단에 선정된 차상위계층, 기초수급계층

마. 민간위탁기간 : 3년 (2020. 1. ~ 2022. 12.)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신규위탁)

사. 소요예산 : 1,236백만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9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항

시장은 장기요양요원 근무환경의 질적향상과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상담 등의 지원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11조 (운영의 위탁)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Ⅲ. 검토 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동의안 제출 개요

- 금번 복지정책실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규위탁 건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이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 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서울특별시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는 요양보조사, 간호사 등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을 위하여 교육 상담 등의 지원을 전문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는 2013년 설치·운영 당시 돌봄종사자 지원시설의 필요성은 있었으나, 민간위탁 시설유형이 없어 시설공간을 확보한 운영체 공모를 통해 은평구청이 선정되어 서울시 사회복지사업보조금으로 운영해 왔으나,
 - 2016. 1월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근거가 마련되었고, 2019.12.31.자로 은평구청은 협약만료 이후 연장운영 의사가 없음을 서울시에 통보함.

2 동의안 대상사무 검토

- 서울특별시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7조의 2 및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 사업범위는 ①좋은 돌봄 인식개선 및 확산 ②돌봄노동자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③돌봄노동자 권리향상을 위한 노동권 사업, ④돌봄노동자 재충전 및 건강증진 사업, ⑤요양현장 조직 지원과 현장 소통 창구 역할, ⑥4개 권역센터(쉼터포함)의 협력적 운영 및 지원, ⑦어르신돌봄가족 지원센터 운영 및 휴가제 지원 사업, ⑧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리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등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 이를 공공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요양현장에서 일어나는 다변화된 환경을 알 수 없고 종사자의 필요에 대한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다년간 어르신돌봄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과 관련한 노하우를 가진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됨.
- 해당 수탁기관은 요양보호사 등 어르신돌봄종사자 건강관리 프로그램, 교육, 상담 등 지원을 통한 어르신 돌봄서비스의 수준 향상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보여짐.

< 서울특별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개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지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0, 대일빌딩2층 -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좋은 돌봄 인식개선 및 확산 · 돌봄노동자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 돌봄노동자 권리향상을 위한 노동권 사업 · 돌봄노동자 재충전 및 건강증진 사업 · 요양현장 조직 지원과 현장 소통 창구 역할 · 돌봄관련 제도 개선 및 정책플랫폼 역할 · 4개 권역센터(쉼터 포함)의 협력적 운영 및 지원 · 어르신돌봄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휴가제 지원 사업 ·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리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소요예산 : 1,236백만원
--

- 센터의 운영은 어르신돌봄종사자들의 역량강화, 인식개선, 권익옹호 등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료됨.

2019년 제9차 위원회 심의결과

연번	부서명	위탁 사무명	유형		수탁기관	심의결과
637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 운영	시설	신규 (공모)	-	적정

3 종합의견

- 금번에 제출된 위탁동의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7조의2 및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근거를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센터의 설립 목표가 어르신돌봄종사자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을 통한 요양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바,
- 요양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에서 일어나는 다변화된 환경을 알 수 없고 종사자의 필요에 대한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점 등을 감안할 때, 다년간 어르신돌봄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과 관련한 노하우를 가진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됨.
- 해당 위탁기관은 권역센터 총괄 기능을 그동안 수행해 왔고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인정되는 바, 권역별 어르신돌봄종사자센터를 둔다는 측면에서도, 본 동의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11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177
----------	------

제출년월일 : 2019년 10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을 위하여, 장기요양요원 근무환경의 질적 향상과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상담 등을 지원하는 전문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 개요

- 시설명 :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 소재지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0, 대일빌딩2층
- 시설규모 : 381.4㎡(2층:280.7/ 6층:100.7㎡)
 - 사무공간, 상담실, 회의실, 쉼터, 교육실
- 설치일 : 2013. 9. 1.
- 운영일 : 2013. 11. 1.

나.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 3년 (2020. 1. ~ 2022. 12.)
- 운영사업(센터의 기능)
 - 좋은 돌봄 인식개선 및 확산
 - 돌봄노동자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 돌봄노동자 권리향상을 위한 노동권 사업
 - 돌봄노동자 재충전 및 건강증진 사업
 - 요양현장 조직 지원과 현장 소통 창구 역할
 - 돌봄관련 제도 개선 및 정책플랫폼 역할
 - 4개 권역센터(쉼터 포함)의 협력적 운영 및 지원
 - 어르신돌봄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휴가제 지원 사업
 -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리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19년 예산액 : 1,236백만원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신규위탁)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9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및 제11조(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 추진배경
 -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는 2013년 설치·운영 당시 돌봄종사자 지원시설의 필요성에도 민간위탁 시설유형이 없어서 시설 공간을 확보한 운영체 공모를 통해 은평구청이 선정되어 서울시 사회 복지사업보조금으로 운영됨

- 2016. 1월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근거가 마련되었고, 은평구청은 2019.12.31.자 협약만료 이후 연장운영 의사가 없음을 서울시로 통보함
-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는 권역센터 총괄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운영·관리하였음
- ※ 현재 운영중인 3개 권역센터(쉽터포함)와 동일하게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중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 등 변경시 신규 민간위탁으로의 처리 기준에 따르면, 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행하던 사무를 이관 받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 민간위탁 처리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동안 보조금사업으로 수행되어 시의회 동의 등 민간위탁에 따른 절차를 거친 바 없어 신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함

라.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센터의 운영은 어르신돌봄종사자들의 역량강화, 인식개선, 권익옹호 등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다년간의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양질의 장기요양요원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법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기존 사회복지보조금사업을 2020.1.1.부터 민간위탁사업으로 변경 운영을 위해 신규 민간위탁 절차에 따라 추진 필요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9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항

⇒ 시장은 장기요양요원 근무환경의 질적향상과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상담 등의 지원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11조
(운영의 위탁)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요양보호팀 정봉기 (☎ 2133-7424)